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군·구가 5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기관 설립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본문 중 “연구원으로서”를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시·도연구원”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도 연구원이없는 경우
- 나. 출자기관에 출자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 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 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 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u>연구원으로</u> <u>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u> <u>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u> <u>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u> <u>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u> <u><신 설></u>	2. ----- ----- ----- ----- ----- <u>연구원(이하</u> <u>이 조에서 “시·도연구원”이</u> <u>라 한다)으로서</u> ----- -----, ----- <u>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u> -----. <u>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u> <u>두 갖춘 시·도 연구원이</u> <u>없는 경우</u> <u>나. 출자기관에 출자하는 금</u> <u>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u>
<u><신 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연 락 처	(044) 205 - 3987